

# 대한위암학회 연구지원 세부운영규정

제정 2018. 01. 09.

개정 2022. 03. 18.

## 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대한위암학회의 지원으로 위암과 관련한 국내 학술연구활동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연구과제공모)

- ① 대한위암학회는 회원들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매년 연구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.
- ② 마감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에 대한위암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과제를 공모하고 이 사실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.
- ③ 기획과제는 학회에서 정한 특정 주제에 대해 공모하고, 자유과제는 주제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심사 시 가점에 대한 안내를 별도로 할 수 있다.
- ④ 당해 연도 공모 편수와 그에 따른 연구비 지원 규모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## 제3조 (자격)

- ① 연구과제공모는 대한위암학회 평생회원 및 정회원에 한한다.
- ② 기획 연구는 책임연구자의 연령제한을 만 50세 이하로 정한다. (공모 시점 기준)
- ③ 자유 연구는 책임연구자의 연령제한을 만 45세 이하로 정한다. (공모 시점 기준)
- ④ 기존 연구비 수혜자는 해당 연구의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 후 다시 연구과제공모에 응할 수 있다.

## 제4조 (심사절차)

- ① 연구과제의 심사위원장은 대한위암학회 연구이사로 한다.
- ② 공모된 연구과제는 연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점수별로 순위를 부여한 후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한다.
- ③ 심사평가항목과 점수 (총점 70점)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 1. 대표성 (10점)
  2. 대중성 (10점)
  3. 연구시급성 (10점)
  4. 수요충족 (10점)
  5. 연구자자질 (10점)
  6. 연구계획서 충실도 (20점)
- ④ 과제공모에 참여한 책임연구자와 현재 같은 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연구위원은 그 주제에 대한 심사에서 제외한다.
- ⑤ 연구과제에 대한 내용 및 심사결과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다.

### 제5조 (연구수행 시 준수사항)

- ① 책임연구자는 연구의 결과물을 연구 계약 체결 후 3년 이내 JGC (Journal of Gastric Cancer)에 우선 투고하고 대한위암학회의 연구 지원 내용을 사사해야 한다. (This study was funded by the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)
- ② 제5조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자는 본회에 연구비를 반납해야 하며, 향후 본회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③ 부득이한 이유로 연구가 기간 내 종료되기 어려운 경우 책임연구자는 연구연장신청서를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, 연구위원회에서 검토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이 가능하다.
- ④ 대한위암학회 연구지원사업 선정 후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.
- ⑤ 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연구 기간 동안 연구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완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제6조 (연구과제의 명칭)

- ① 본 연구의 통칭은 'KGCA 연구'라 하고 각 연구의 명칭은 'KGCA-연구선정순-연구승인년도-연구코드'로 한다.
- ② KGCA는 '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'의 약자이다.
- ③ 연구 코드는 다음 항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하며 각 연구의 명칭은 연구위원회에서 확정한다.
  - B – 기초연구 (Basic research)
  - C – 항암치료 (Chemotherapy)
  - E – 내시경 (Endoscopy)
  - G – 진료지침 (Guideline)
  - Q – 삶의 질 (Quality of life)
  - R – 수술 후 관리 (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, Postoperative management)
  - S – 수술 (Surgery)
  - T – 병기 (Staging)

### 제7조 (연구비의 지급 및 사용)

- ① 학회는 선정된 책임연구자의 기관을 통해 연구비지급 계약을 체결하고, 최대한 조속히 책임연구자의 기관에 연구비를 입금한다.
- ② 연구비는 그 지급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.

### 제8조 (부칙)

- ① 본 규정은 대한위암학회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상위운영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.